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 181-612 (전화번호 725-6379)	결정 규정	조항 결정사항
처리기간		시	작
시행일자	82. 9.	9/10	
보존년한		9/10	
보조기	부지장 01-2222926 2344		
기획관리실장	11102		
법무 담당관	법제과장 10		
기안책임자	이상돈		
경유 수신 참조	기획과 안찰조	발 신	1982. 9. 15. 10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실사분석에 관한 규정 82. 9. 30 면장 580호
제목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실사분석에 관한 규정		
(제1안) 부부 결재			
<p>1. 기획 150-262 (82.8.2)호의 관행입니다.</p> <p>2. 정부의 기획 및 실사분석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82.5.15. 대통령령 제10821호) 종전의 기본운영 계획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업무 계획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본운영 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당시 실사분석 업무 취급 규정과 기획 조정위원회에 규정을 폐지하고</p> <p>3. 등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82.9.15 당시 법규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친 별첨(안)을 발령처행코자 합니다.</p>			
첨부	정서		
첨부	관인		
첨부	발송		
수신	문학공보관		
제목	시보개재		

1205-252-1(A)  
1982. 12. 18. 증인

정직 질서 창조

190mm x 265mm (인쇄용지 2면 60g/m<sup>2</sup>)  
초당 35000ppm 238

별첨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심사본식에 관한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한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장 제 호 1부. 끝.

(제3안)

## 수신 : 가획담당관

ପାଠ୍ୟ ମୂଳ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별첨과 같이 서보에

개재 발령하였으니 시영에 착도 없도록 할 것.

• 1부. 1호. 제 100주년 기념 특집호

## 1. 주 정 이 유

정부의 기획 및 실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0821호, 82.5.15)

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기구 개편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실사분석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의 등을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로자함.

## 2. 주 要 章

가. 기획 및 실사분석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시함 (제3조)

나. 종 랙의 기본운영 계획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업무 계획 제도를 도입함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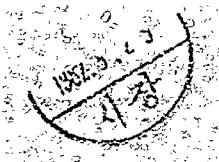
다. 실사분석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또는 본기별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등  
실사분석 결과 조치를 강화함. (제5조)

라. 규정, 사업소의 실사분석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전기관의  
실사분석 활동을 활성화함. (제10조)

마. 기획 및 실사분석에 따른 보고책임, 기한등을 명시함. (제11조)

##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정부의 기획 및 실사분석에 관한 규정 (별첨)



서울특별시 기획 및 산자본처에 관한 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8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76 16 배

## 서울특별시 훈령 제

### 서울특별시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업무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각국, 구청 및 직할 사업 소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대통령각하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상 책정된 사업

2. 대통령 각하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시 중요 경제사업으로 확정 된 사업

3. 기타 시장에게 보고한 중요사업

(2)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 계획을 심사분석하기 쉽도록 서체별로 단위 사업별로 분류,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심사분석"이라 함은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등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획 및 심사분석 책임) (1)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시·전반적인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책임을 지며 기획담당관은 시 주요업무 계획, 시행계획의 종합 및 심사분석 업무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2) 본청국장 (이하 "국장"이라 한다),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소관업무 (산하 사업소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 및 심사분석에 대하여 종괄적인 책임을 진다.

(3) 국·주·부국장, 구청, 총무국장 및 직할사업소 서무 담당과장은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장, 구청장, 및 직장

사업소장을 보좌한다.

1. 2)

제4조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1) 기획관리실장은 매년 8월 30일까지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2)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을 그 해 9월 30일까지 주립 시장 (기획관리실장 참조)에게 보고한다.

(3) 제2항의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후 이를 보완하여 확정한다.

제5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 (1) 기획관리실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해 2월 10일까지 시장 (기획관리실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시책 또는 사업의 변경,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없이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사유서 및 그 근거 책략과 함께 이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분석) (1)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은 지역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년도의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2월 말까지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제1항의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본 기별로 매년 기간별로 날후 20일 이내에 심사분석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기획관리실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획관리실장(기획담당관)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사업종 종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 매월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종료 예정 및 설명요구 등) 기획관리실장은 시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인, 점검을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주로의 계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분석 결과의 처리) (1)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는 이미 시정한 조치 내용, 조치계획 및 주요 시책과 사업의 대한 추진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획관리실장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의 결과를 통보 받거나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예산편성 또는 본기별 예산 배정에 반영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명을 받아 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에게 그 시정을 명의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받은 관계국장, 구청장 및 직할사업소장은 자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심사분석 평가 보고) 기획관리실장은 년2회 각국, 각구청 및 직할사업소의 실사·실행동역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보고) (1) 기획 및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할에 따른 보고는 일보, 주보, 월보, 본기보고, 수시보고로 한다.

(2) 제1항의 보고 내용과 보고 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보 - 일일 주요업무 처리 실적 및 계획

(매일 일자 종료 시까지)

2. 주보 - 주간업무 계획  
      (매주 목요일 12시까지)

3. 월보 - 월별 주요업무계획, 시장지시사항 처리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매월 5일까지)

4. 본기보고 - 심사분석보고,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추진현황  
(매기본기 20일까지)

제12조 (보고의 책임) 보고의 제출 및 수합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작성자 : 주관과 주무과장 (구청, 직할사업소 담당과장)

2. 제출책임 : 주관과장 (구청, 직할사업소 주관과장)

3. 수합책임 : 국, 실의 주무과 주무과장 (구청 기획감사과장, 직할  
      사업소 서무과장)

4. 수합감독 : 국 주무과장 (구청 총무국장)

제13조 (위원회)(1) 시정 시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각국  
      과 소속 기관의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책조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다로 정한다.

제14조 (주요업무 협의)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중요시책 입안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정원, 용역사업 범주, 주요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차지법규의 경비방침이나 소송에 관한 중요사항

4. 현황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기록 자료 제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한 주무과장은 그 자료의 부본  
      1부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탁대금, 국무총리실등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자료

2. 대외공표를 위한 서정자료
3. 업무와 관련된 각종 유인물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 및 서울특별시 삼사본식 업무 취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